등록번호

미주보상2025



인수보상 위임전결규정 인수보상 위임전결규정 제10-5-①-ㅁ, 제10-5-②-ㄹ호 팀 장 전 결

(등록일자) 장 팀 파트리더 · | 2071 12/2002 갂 사 국외보상채권부 미주보상팀 기 안 팀 합의 기 안 자 대리 방서현 내게 2025. 6. 기안일자 참 조 시행일자 2025. 6. 일상감사 발 신 공개구분 수 각안 참조 제 京 찬 조 모 각안 참조 제

(제 1 안)

수 신: 내부결재

제 목: 다기수출보험(선적후-일반수출) 사고건 보험금 지급

- 1. 고려용접봉㈜ 대 에콰도르 COLIMPO S A 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수출 보험(선적후-일반수출) 사고건(손실액 : USD413,940.22)과 관련됩니다.
- 2. 상기 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심사한 결과, 수출자는 수출이행과정에서 단기수출보험 (선적후-일반수출) 약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바, 동 약관 제5조 (손실액), 제6조(보험금) 및 제24조(보험금의 지급)에 따라, 잔여 손실액 USD413,640.22에 부보율(70%)를 곱한 금액과 보상한도 중 적은 금액인 USD200,000을 수출자 앞 보험금 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.

붙 임 : 단기수출보험(선적후-일반수출) 보상심사서 1부. 끝.

*	※ 전자기안 예외사유 (문서사무규정 제8조제1항)							
7	제1호(비밀유지) []	제2호(타법의거) []	제3호(보안유지) [O]		
	(비밀보호만료일:)	(근거법령:)	(열람제한만료일:)		

단기수출보험(선적후-일반수출) 보상심사서

1. 보상판정 개요

(단위: USD)

손실액	결제금액	잔여 손실액 (C)	부보율	보상한도	지급보험금
(A)	(B)		(D)	(E)	Min[(C*D),E]
463,940.22	50,000	413,940.22	70%	200,000	200,000

2. 수출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

구 분	내 용	비고		
수 출 자	고려용접봉㈜	A급('25.5.12)		
수 입 자	COLIMPO S A (에콰도르)	G1급('22.4.7) → R급('24.12.6)		
수출상품 용접재료		<u>-</u>		
결제조건	T/T 90 Days from B/L Date	<u>-</u>		
보험종목	단기수출보험(선적후-일반수출)	보상비율 70%, 책임금액 USD20만		

3. 사고건 수출이행내역

(단위: USD)

순번	선적일	만기일	수출통지금액	결제금액	손실액	비고
1	`22. 2.28	`22. 5.29	211,584.22	50,000	161,584.22	
2	`22. 6.18	`22. 9.16	80,784	_	80,784	_
5	`22. 7.15	`22.10.13	171,572	_	171,572	
	합 겨		463,940.22	50,000	413,940.22	

4.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 청구일

사고발생통지일 (통지 기한)		보험금 청구일	`25. 5.12	지급시한	`24. 7.12
(통지 기한)	(22.7.29)	る丁苣			

^{* 「}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지침」에 의거, 최초 사고건 만기일로부터 2개월

5. 사고조사내용 (붙임4. 사고조사보고서 참조)

☐ 거래 및 사고경위

수출입자는 약 20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왔으나 수입자 상황 악화 및 현지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에 따라 대금지급 지연 발생

__ 사고조사내용

- (국외사고조사) 파나마지사 현지 사고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입자는 건물 매각 및 국제 대출을 통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힘
- (수입자채무인정 및 클레임) 수입자 대표는 구두로 현재 수출자 앞 채무 금액이 사고통지금액인 USD413,640.22가 맞다고 인정하였으며 별도 클레임 제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

6. 심사사항 및 심사의견

가. 심사사항

>	적격	여부	비고
단기수출보험(선적후-일반수출거래 등) 약관 세부심사사항	적격	부적격	-11 -1 -
①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(제16조)	V		3/2 / 1/2
② 보험부보 적격대상 여부 (제2조)	V		- 1
③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여부	V		
- 고지의무 위반 (제9조)	V	<i>J</i>	
- 내용변경 (제18조)	· V		
- 보험료 연체 등 (제19조)	V		8 - 1
④ 면책조항 해당 여부	V		
- 본지사간 신용위험 (제7조 제1항 제1호)	V		
— 연속수출 (제7조 제1항 제2호)	_ V		
- 물품의 멸실, 훼손 등 (제7조 제1항 제3호)	V		
-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 (제7조 제1항 제4호)	V		
-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 (제7조 제2항 제1호)	V		
- - 손실방지 경감의무 위반 (제10조)	V		
- 다른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 등의 통지의무 위반(제11조)	V		
- 조사 및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(제12조, 제13조)	V		
- 사고발생 통지지연 (제21조)	V		증가손실無
⑤ 변제충당 여부 (제31조)	V		
⑥ 보험계약자의 수출채권 훼손 여부(제5조)	· V		1 1 1
⑦ 공사 보유채권과의 상계 필요 여부 (국외보상요령 제14조)	V		

나. 심사의견

(종합의견)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, 단기수출보험(선적후-일반수출) 약관 및 관련 규정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바, 동 약관 제5조 (손실액), 제6조(보험금) 및 제24조(보험금의 지급)에 따라, 잔여 손실액 USD413,640.22에 부보율(70%)를 곱한 금액과 보상한도 중 적은 금액인 USD200,000을 수출자 앞 보험금으로 지급하고자 함

7. 향후 조치사항

ㅇ 파나마지사에 이관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하고자 함

【 사후관리 이관 주요사항 】

구 분	내 . · · · 용
채권추심 대상금액	• USD413,640.22
수입자 채무인정서 제출여부	▶부
수입자 상환계획서 제출여부	→ 부
수입자 영업여부	► O=
수입자 클레임 제기여부	→부
수출화물 상태	· 전부 인수
기타 특이사항	▶부

(제 2 안)

수 신:고려용접봉㈜ 대표이사

제 목 : 단기수출보험(선적후-일반수출 등) 사고건 보험금 지급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- 2. 본건은 귀사 대 에콰도르 COLIMPO S A 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수출 보험(선적후-일반수출) 사고건(손실액 : USD413,940.22)과 관련됩니다.
- 3. 상기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귀사의 단기수출보험(선적후-일반수출) 약관 및 관련 규정 사항을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, 동 약관 제5조(손실액), 제6조(보험금) 및 제24조(보험금의 지급)에 의거, 잔여 손실액 USD413,640.22에 부보율(70%)를 곱한 금액과 보상한도 중 적은 금액인 USD200,000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송금요청서, 보험금 수령계좌 및 국문·스페인어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. 또한, 귀사는 우리 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동 약관 제26조(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) 및 제29조(보험금지급후의 채권회수)에 의거, 본건 채권회수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,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회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우리 공사 앞으로 성실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5. 아울러, 우리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고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,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클레임 제기 등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귀사에 보험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